

## 소 장

원 고 1. 주진오 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정민영

피 고 교육부장관

수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변호사 정 민 영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전화 (02)723-0666 팩스 (02)-6919-2004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11. 29. 소외 (주)천재교육, 두산동아(주), (주)미래엔, (주)금성출판사, (주)비상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사항에 관한 수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대학의 역사관련 전공 교수, 고교 역사교사들로 (주)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이 사건 교과서’라 하겠습니다)의 각 공동저작자들입니다<sup>1)</sup>. 원고 주진오, 신주백은 (주)천재교육, 원고 왕현

---

1)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지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교과서 수정명령이 있을 경우, 출판사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들이라 할 수 있고,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호사 정 민 영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전화 (02)723-0666 팩스 (02)-6919-2004

중, 이인석은 두산동아(주), 원고 한철호, 김인기는 (주)미래엔, 원고 도면희, 이견홍은 (주)비상교육, 원고 김용석, 이종대는 (주)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공동저자들입니다. 이 사건 교과서들은 2013. 8. 30. 피고로부터 검정합격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교과서들을 포함한 7개 교과서 발행사에 대하여 2013. 11. 29.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린 자입니다.

## 나. 이 사건 수정명령의 경위

앞서 살펴보았듯, 원고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사건 교과서들은 이미 2013. 8. 30.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2013. 9. 11. 피고는 ‘일부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3. 10. 21. 이 사건 교과서를 포함한 8종 교과서에 대하여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갑 제1호증)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발행사 및 집필진은 피고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2013. 11. 1. 피고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829건의 수정·보완 대조표 중 788건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41건에 대하여 수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위 41건 중 원고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5개 출판사에 대한 수정명령은 모두 29건입니다(이하 ‘이 사건 수정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9. 2., 2009구합6940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수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이 하위법에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음이 명백한 만큼,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헌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또 이 사건 교과서들에 대한 피고의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데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겠지만, 교과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심의회를 통해 대단히 짧은 기간의 심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 관계법령 및 교과서 검정제도의 헌법적 의미

#### (1)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2조 (정의)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교과서 검정제도의 의의

이 사건 수정명령의 위법성을 논하기 앞서, 교과서 검정제도가 교육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요청을 어떻게 구체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한

편, 내용을 정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함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9. 2. 2009구합6940 판결).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이로부터 위임받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은 동시에 국가의 교육내용 결정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함을 여러 곳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도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세력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 정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이 요청이 교육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국가의 재량을 한계짓는 기능을 함은 물론입니다.

## ②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의 도입배경: 역사 해석과 관점의 다양성 제고

교과서 검정제도의 도입은 위에서 살펴본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결과물입니다. 종래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획일적 시각을 강요하고 권력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오랜 기간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적 움직임에 따라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고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

교과용도서 검정은 2010년부터 실시되었는데, 2011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검정제도 도입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개발 주체를 다양화하여 교과목별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과용도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과용도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역사교과서의 경우 사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가능한 만큼, 검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의 도입은 교과서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③교과서 검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국가가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서 검정에 있어 상세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교과용도서관련규정 제18조·제19조는, 교과서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두어야 하며, 심의회는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 이외에 교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주체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정교과용도서를 행정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는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교과서를 검정할 때에는 국가가 일정한 관점을 가진 교과용도서만을 검정교과서로 선정하는 관점규제(viewpoint discrimination)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전문가인 교사와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견제하도록 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sup>2)</sup>

2) 박경신, 교과서 검인정 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학생의 교육권에 관한 미국판례들을 중심으로-, p105-108, 법학논총 제26집 제4호(2009)

“미국의 교과서선정은 지역교육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교과서결정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교재의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교사, 도서관 직원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본다면, 일단 검정절차를 거친 교과서에 대한 내용 변경역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이 당연하며, 대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국가가 손쉽게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면, 검정절차를 통해 보호하고자 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등의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 수정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의 위헌성

(1) 이 사건 수정명령의 근거가 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와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는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수정명령은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것인만큼, 위법임이 명백합니다.

---

행정관료 그리고 가끔은 학생과 부모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보통은 민원을 처리한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건전한 교육적 학문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결정은 거의 항상 준수 된다. 그러나 개인의 견해차에 따른(viewpoint-based) 우려에 따라 교재가 수거되거나 제거된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소송이 제기된다. 대부분 순회지구 항소법원들은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관점규제를 통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정명령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2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수정명령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이 사건 수정명령 심의과정의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1)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은 ‘수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만큼,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정명령과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합격 발표 이후 일부 교과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수정명령이 단순한 ‘수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과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수정명령 내용들을 보면,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할 것((주)미래엔에 대한 수정명령 2번)”,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할 것([주]천재교육에 대한 수정명령 7번)” 등 상당수가 교과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피고는 애초 거쳤던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이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등 적법한 검정절차를 거쳐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자의 법률상 이익을 쉽게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수정명령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의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에 준하는 절차<sup>3)</sup>를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2) 피고가 거쳤다고 주장하는 수정심의회 심의과정은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수정심의회 심의과정과 관련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수정명령결정이 검정절차에 준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관련 교과서의 검정 세부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듯 국사편찬위원회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한국사교과서의 심의는 크게 기초조사와 본심사, 이의신청으로 나뉘고 각각의 절차는

---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서 검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두는데, 이 심의회는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피고가 위촉 또는 임명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제18조, 제19조). 이 규정 제21조는 회의 소집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심의회에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제23조).

〈그림 3〉 교과용도서 검정 위탁기관의 세부 절차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1.4.19. 내용 일부 수정.

연구위원 및 검정위원의 연수 및 합숙조사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 정리, 종합논의 등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검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8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볼 때, 피고가 거쳤다는 수정심사위가 검정절차에 준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도무지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피고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정명령의 위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수정심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구성한 자문위원회나 수정심의회는 법적 근거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피고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검정 절차의 경우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피고의 위탁을 받아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sup>4)</sup>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과 관련해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13. 11. 20.

검정실시의 공고, 검정심사, 검정의 합격 결정, 불합격 결정의 통지, 합격 공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피고가 구청해 거쳤다는 수정심의위는 일단 그 법적 근거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②수정심의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기간은 2주 정도로, 통상의 검정절차에 비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설령 피고가 거친 수정심의회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 자체가 대단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고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수정명령과 관련해 수정심의회는 2013. 11. 16~2013. 11. 27.까지 2주 남짓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 내용을 보면, 검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는 통상 8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회답 내용에서 법제처는 이 사건 수정명령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이 수정 명령을 결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2014년에 당장 학교에서 쓰일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절차에 준하는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조사회답을 근거로 한 박 의원의 피고에 대한 질의

---

22조 ⑦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다.[신설 2011.1.24, 2012.4.16 제23726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12.11.6 제2415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2013.3.23]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항에서“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 2.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 3.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 4.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 5.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 6.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 7.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 8.영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구성·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변호사 정 민 영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전화 (02)723-0666 팩스 (02)-6919-2004

에 대하여도 피고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정·보완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기간” 이라고 주장할 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그렇게 볼 때, 수정심의회가 이 사건 수정명령과 관련해 검정에 준하는 정도의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③피고는 수정심의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수정심의위원회의 논의과정 무엇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피고는 수정심의회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413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인력풀 속에서 수정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고, 심의위원 명단이나 회의 일시, 회의록 등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한국사교과서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뒤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피고의 심의가 객관적이고 엄격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 (3)소결

이 사건 수정명령은 사실상 내용의 변경에 이르는 것인만큼,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의 수정심의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그 활동에 있어서도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4.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수정명령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명령이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의 수정명령이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드러내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사실상 폐기된 학설을 근거로 수정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갑 제5호증), 수정심의 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최근 제기되는 수정명령 내용에 대한 논란을 종합해 추후 서면에서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이 가진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데다가, 검정에 준하는 충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2013.10.21.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보완권고                                |
| 1. 갑 제2호증 | 2013.11.29.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
| 1. 갑 제3호증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신: 교육부장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권고 및 선정·주문일정 연기에 대한 검토 |
| 1. 갑 제4호증 | 민주당 박홍근 의원 보도자료<br>“교과서 수정권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무대책인 교육부“       |
| 1. 갑 제5호증 | 한국일보 2013. 12. 3.<br>“교육부, 폐기된 학설 근거로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명령”          |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외국사례”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1부 |
| 1. 소송위임장  | 1부  |

2013. 12. 3.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정민영

서울행정법원 귀중